



건설안전기술 제42호에 게재되었던 업무상 재해조사 절차에 이어지는 자료입니다. 제44호까지 이어질 한경보 회장의 특강이 회원 여러분께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.

## 제 2 장

# 재해발생시 처리절차

### 1. 재해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

#### 가. 병원후송

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사고상황 사진 확보, 응급후송차량 연락조치, 환자의 상병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합한 병원으로 긴급후송

#### 나. 보고 및 현장보존

- 1) 사내보고 : 사고발생 즉시 안전관리자 및 해당부서 장에게 보고하고 사고발생 원인 등 제반조사가 완료 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
- 2) 가족통보 : 재해자가 중상일 경우 즉시 가족에게 통보하고 가족현황 파악
- 3) 대관보고 : 중대재해(1인 이상 사망 또는 초진 3개월 이상 증상 2인 이상)시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와 관할노동부 산업안전과에 “중대재해발생보고서” 양식에 근거 공장 개요, 재해자인적사항, 피해상황, 향후 조치 및 전망 등을 기재하여 FAX 송신 또는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다.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의 진술서 확보

중대재해 발생시 목격자진술은 향후 처벌 및 합의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. 따라서 사고발생 직후 일단 목격자 및 작업 지시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①사고경위 ②작업지시내용 ③사고당시안전시설 여부 ④사고당시

보호구 착용현황 ⑤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⑥수시 안전점검 실시 여부 ⑦그 외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 등을 체계적으로 문답방식으로 조사하여 사고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동 진술서 및 사고현황 조사 자료에 근거 사고보고서,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.

사고이후 원·하도급의 현장소장이 경찰 또는 노동사무소에 출두하여 행하는 피의자 진술내용은 변명에 불과하지만, 이러한 변명을 대외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“목격자 진술서”이므로 목격자를 확보하고 진술서 내지는 확인서를 입증 서류로 받아두는 것은 사고처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.

\* 부상재해의 경우라도 장해가 남아서 소송까지 예상되는 재해의 경우에는 목격자진술서 및 작업지시자 문답진술서를 공증을 받아두면 이후 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#### 라. 입증자료의 수집 및 보존

- 1) 사망사고 시에는 경찰서와 노동부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보존, 사고발생 시 조사자는 카메라, 줄자 등을 준비하여 조사의 객관성 유지
- 2) 사고현장의 사진 및 약도
- 3) 목격자,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자 등 사고관련 담당자 진술서 확보

- 4) 제3자 개해(임대장비 운전상 과실 등)여부 확인조사
- 5) 채용관련서류 확인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)
- 6) 사망 경우 사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5매 이상 확보
- 7) 피재자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(사망 시) 확보하여 합의당사자 결정

## 2. 관련기관 제출서류

### 가. 제출서류 준비

- 1) 법인등기부등본
- 2) 사업자등록증
- 3)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(장배임대의 경우 임대 계약서)
- 4)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신고서
- 5)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
- 6)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
- 7) 사업주간협의회 회의록
- 8) 안전교육일지(채용, 정기, 변경, 특별, 신호수, 관리 감독자)
- 9) 보호구 지급대장
- 10)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경우 정기감사증 등
- 11) 중량물 취급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
- 12) 사고경위서
- 13) 목격자진술서
- 14) 사고 상황도 및 사진
- 15) 안전점검일자, 출역일보 또는 출근부 등

### 나. 제출기관

위의 서류를 4부 복사하여 회사보관, 노동부, 경찰,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

### 다. 사업주의 안전상조치 의무이행여부 입증

산업안전보건법상의 “안전상 조치” 의무를 충분히 이

행하였을 경우에는 사고개요 ①사고와 관련한 안전상, 조치사항 ②보호구 지급, 안전교육 실시 ③사업주간 협의회 실시 ④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 및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조치사항 준수여부 확보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## 3. 합의서

### 가. 합의당사자

사망재해 시 합의당사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 및 민법상의 상속권자(호적상의 처, 자녀)가 포함되도록 합의하여야 한다.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처가 있는지 여부 등 재해자의 가족상황을 조사하여 합법적인 합의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
통상 중대재해 시 재해자와 가장 가까운 부서장(협력 회사의 경우 공장장, 사장)이 합의 설득하고 부진정 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도급인 등은 합의를 지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.

### 나. 합의금액의 산정 및 합의서 작성

- 1) 사고 직후 합의 : 사망재해의 경우 재해자 유가족들이 인감증명이나 호적등본 등을 제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합의서에 수급권자 및 상속권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지장을 찍는 방식으로 약식 합의한다. 이때 합의는 합의금액 수준 및 합의금 지급일(사고일 이후 2주~3주 정도)을 결정하고, 장의비는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 합의를 하게 된다.
- 2) 정식합의 : 산재수급권자 및 상속권자들은 재해자의 호적등본 3부, 주민등록등본 3부, 수급인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각 3부를 제출하고 회사는 합의금을 지급하면서, 동시에 합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는 방식으로 합의하게 됨.